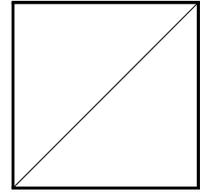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4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6.24.~7.19. 기간 중 실시한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1,775건(초회보험료 297.3백만원)의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459.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0년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0.8.21.) 심의완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 위법행위 지시 등 추가사실이 발견된 임원에 대해 조치를 가중(대표이사 등 임원 3인 : 직무정지 3~6월 → 해임권고)하고,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 가담정도와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일부감액(설계사 12명 : 2억 2,980만원→1억 8,370만원)

<별지>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 과태료 30,13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2. 조치사유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1,775건(초회보험료 297.3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459.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에 해당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붙임1)

관 계 법 규

□ 舊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생략)

1.~3. (생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③ (생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8. ~ 17. (생략)

⑥ (생략)

□ 舊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모.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5항제7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350만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 제>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생략)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생략)

나. 감경 사유

(1)~(4) (생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7) (생략)

5. (생략)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별표 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 건수를 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예정비율 또는 위반결과의 판단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생략)

나.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및 제209조제5항제7호·제11호(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또는 부당 수수료 지급)

- (1)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2) 위반건수 : 위반자로부터 제99조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함에도 모집을 위탁받거나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받은 자(이하 “무자격자”라 한다)의 수
- (3) 예정비율의 산정(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정비율의 40% 수준 적용)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7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5%	법정최고금액의 45%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30%	법정최고금액의 20%
경미(법인1)	법정최고금액의 25%	법정최고금액의 15%	법정최고금액의 5%
경미(법인2)	법정최고금액의 10%	법정최고금액의 7%	법정최고금액의 4%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600만원 또는 보험계약건수 50건 이상
- 2) 보 통 :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400만원 또는 보험계약건수 30건 이상
- 3) 경 미 :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400만원미만이고 보험계약건수 30건 미만. 다만,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인 경우 경미(법인1), 무자격자별 지급수수료 150만원 미만이고 보험계약건수 10건 미만인 경우 경미(법인2)를 적용한다.

다. (생략)

3.~4.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 .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30,130만원 부과
임·직원	대표이사 등 임원 3명 :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50명 : 과태료 180~3,50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45명 : 업무정지 30~180일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등 54명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의 ‘△△△△△△보험’ 등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7.3백만원)을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66.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등 4명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의 ‘△△△△△△보험’ 등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2)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2018.1.3.~2019.5.31. 기간 중 ○○○○ 보험(주)의 '□□□□□□보험' 등 1,775건(초회보험료 297.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3명에게 총 1,459.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항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등 33명은 2018.1.1.~2019.6.30. 기간 중 □□□□보험(주)의 '△△△△△△보험' 등 4,366건(초회보험료 507.6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760명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26.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영업검사실
연 락 처	02-2100-2945	02-3145-7265